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소책자)시험족보 9p 번호 : 14	문제-본문	[문제] ②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송금도 5만불 한도에 포함된다. [해설]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송금은 5만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 ②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송금도 5만불 한도에 포함된다. [해설]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송금은 5만불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10p 번호 : 15	문제-본문	[문제] 거주자가 미화 3천불을~ [해설] 미화 3천불 이하는 신고예외, 미화 3천불 초과는 신고해야 하며, 미화 3천불 초과부터 미화 1만불까지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1만불 초과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이다.	[문제]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해설] 미화 5천불 이하는 신고예외, 미화 5천불 초과는 신고해야 하며, 미화 5천불 초과부터 미화 1만불까지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1만불 초과는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사항이다.
(소책자)시험족보 16p 번호 : 28	문제-본문	[문제] ① 지급인별로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의 연간 지급금액	[문제] ① 지급인별로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의 연간 지급금액
26p 번호 : 55	문제-본문	[정답] 미화 3천불, 미화 5만불, 미화 3천불, 미화 3만불	[정답] 미화 5천불, 미화 5만불, 미화 5천불, 미화 5만불
27p 번호 : 57	문제-본문	[문제]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거주자에 대한 매각은 미화 2천불 이하까지 가능하다.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매각한 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미화 2천불까지는 매각실적이 없어도 매각 가능하다.	[문제] 환전영업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은 '최근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매각한 실적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전산으로 환전장부를 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도 거주자 및 비거주자 공히 미화 4천불까지 매입 또는 매각 가능하다.
27p 번호 : 58	정답	[정답] 1, 2	[정답] 2, 2
28p 번호 : 59	문제-본문	[문제] k뱅크, 카카오뱅크 등의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문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소책자)시험족보_핵심정리 29p 밑에서 7번째줄	개념,공식-설명	• 건당 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의 거래	• 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거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0p 번호 : 66	문제-본문	[문제]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를 징구해야 하며, 연간 누계액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3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문제] 연간 누계 미화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확인서(사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거주자의 실체를 확인할 서류 등)를 징구해야 하며, 연간 누계액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소책자)시험족보_핵심정리 30p 밑에서 11, 6째줄	문제-본문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송금 및~
31p 번호 : 70	문제-보기(지문)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 산정 시 제외된다.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5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미화 5만달러) 산정 시 제외된다.
32p 번호 : 71	문제-본문	[박스 안 지문]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박스 안 지문]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지급인별로
(소책자)시험족보_핵심정리 36p 위에서 9번째 줄	문제-본문	~거래금액이 2천만원 상당액 이상인~	~거래금액이 1천만원 상당액 이상인~
39p 번호 : 87	문제-본문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3천달러 초과 신고예외사항 수령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5천달러 초과 신고예외사항 수령
39p 번호 : 86	문제-본문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3천불 을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	[문제 지문] ② 건당 미화 5천불 을 초과하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간 누계액이 미화 1만불 초과
40p 번호 : 90	문제-보기(지문)	[문제 지문] ③ 건당 미화 3천불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며 '미화 3천불 초과 미화 1만불 이내 금액의 제3자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문제 지문] ③ 건당 미화 5천불 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며 '미화 5천불 초과 미화 1만불 이내 금액의 제3자 지급'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43p 번호 : 97	문제-본문	[정답] 미화 3천불	[정답] 미화 5천불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4p 번호 : 98	문제-본문	[문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화 3천불 이하의 지급과 대부분의 수령 행위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규정에서 정한 신고예외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3천불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제외하고, 미화 3천불 초과~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 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아닌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문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미화 5천불 이하의 지급과 대부분의 수령 행위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규정에서 정한 신고예외 거래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 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해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제외하고, 미화 5천불 초과~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을 제 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아닌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한다.
48p 번호 : 110	문제-본문	[문제] 거래 건당 미화 3천불 이내인 경우에는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신고가 필요치 않다. 또한,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거래 건당 미화 3천불을 초과하는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 받으면 된다.	[문제]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에는 자본거래라 하더라도 신고가 필요치 않다. 또한,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거래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자본거래를 하더라도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치 않으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 받으면 된다.
72p 번호 : 169	문제-본문	[문제]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최대 지급가능금액은 미화 ()불이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정답] 10, 20만, 3	[문제]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최대 지급가능금액 한도제한은 없으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정답] 10, 3
73p 번호 : 170	해설	[해설] 최대 20만불 범위 이내이다(2018.12.24 변경).	[해설] 금액한도 제한 없음(2019.5.3)
94p 번호 : 26	문제-본문	[문제] 미화 3천불 이하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해설] 미화 3천불 이하 소액거래는 지급등과 관련하여~	[문제] 미화 5천불 이하의 경우와 같은 소액거래 시 생략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해설] 미화 5천불 이하 소액거래는 지급등과 관련하여~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5p 번호 : 28	문제-본문	[문제] 국민인 거주자에 대해 ~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3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문제] 국민인 거주자에 대해 ~ 미화 5만불 한도란 건당 5천불 초과 거래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지급누계액이다.																				
96p 번호 : 28	해설	[해설] ■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3천불 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	[해설] ■ 제4-2조(지급등의 절차) ① 건당 미화 5천불 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																				
105p 번호 : 42	해설	[해설] ■ 당발송금 시 확인사항 및 징구서류 징구서류 • 신분증 사본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미화 3천불 상당액 이하는 제외)	[해설] ■ 당발송금 시 확인사항 및 징구서류 징구서류 • 신분증 사본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는 제외)																				
109p 번호 : 49	문제-본문	[해설 도표 수정] 국민인 거주자(원화계좌, 외화계좌 공통) <table><tr><td>구 분</td><td></td></tr><tr><td>미화 3천불 이하</td><td></td></tr><tr><td>미화 3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td><td></td></tr></table>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table><tr><td>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td><td>건당 미화 3천불 이하</td></tr><tr><td></td><td>건당 미화 3천불 초과</td></tr></table>	구 분		미화 3천불 이하		미화 3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해설 도표 수정] 국민인 거주자(원화계좌, 외화계좌 공통) <table><tr><td>구 분</td><td></td></tr><tr><td>미화 5천불 이하</td><td></td></tr><tr><td>미화 5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td><td></td></tr></table> 외국인 거주자, 비거주자 <table><tr><td>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td><td>건당 미화 5천불 이하</td></tr><tr><td></td><td>건당 미화 5천불 초과</td></tr></table>	구 분		미화 5천불 이하		미화 5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구 분																							
미화 3천불 이하																							
미화 3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	건당 미화 3천불 이하																						
	건당 미화 3천불 초과																						
구 분																							
미화 5천불 이하																							
미화 5천불 초과~5만불 이하 (동일자, 동일인, 동일점포 기준)																							
수취계좌가 원화계좌인 경우	건당 미화 5천불 이하																						
	건당 미화 5천불 초과																						
126p 번호 : 82	문제-본문	[문제] 혐의거래(의심거래) 보고(STR) 대상 거래는 ~ 고객주의(확인) 의무(CDD)는 미화 () 이상(원화는 2천만원) ~ [해설] • 고객현금거래(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동일자·동일인 명의로 2천만원 이상 • 고객주의(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미화 1만불 이상(원화는 2천만원)을 [정답] 2천 , 금융정보분석원, 1만불	[문제] 혐의거래(의심거래) 보고(STR) 대상 거래는 ~ 고객주의(확인) 의무(CDD)는 미화 () 이상(원화는 1,500만원) ~ [해설] • 고객현금거래(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 동일자·동일인 명의로 1천만원 이상 • 고객주의(확인)의무(CDD ; Customer Due Diligence) : 미화 1만불 이상(원화는 1,500만원)을 [정답] 1천 , 금융정보분석원, 1만불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